



영국, 인적사고 손해배상액 일시금 산정 시 마이너스 할인율 도입

채원영 연구원

연구

최근 영국 법무부는 인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일시금 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을 기존 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함. 이는 저금리 반영과 보험금 산정 목적에 맞는 할인율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것임. 금번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나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으로 그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은 인적사고(Personal Injury and Fatal Accident)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일시금 산정 시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적용 계리 통계표(이하 ‘Ogden Table’)¹⁾를 사용하며, 법무부 장관(Lord Chancellor)이 본 통계표의 할인율을 변경함.²⁾

- Ogden Table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망률, 은퇴시점 등을 고려한 승수와 할인요소 등을 계산해 놓은 표로서 승수와 할인요소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과 치료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데 사용됨.
- 특히 할인요소를 결정하는 할인율은 보험사고 발생 이후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2017년 2월 27일,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Ogden Table의 할인율 산정 방식을 소폭 변경하면서 현행 할인율 2.5%를 -0.75%(2017년 3월 20일 시행)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발표함.

- 새로 적용될 할인율은 만기 5년 이상인 영국 물가연동채(ILGs: Index Linked Gilts) 실질수익률의 2016년 12월 30일 이전 3년간 단순평균으로 산정됨.

1) 영국 보험계리국(GAD: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United Kingdom)은 승수 사용에 대한 건전한 보험 수리적 원칙을 제정하기 위해 1984년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적용 계리 통계표(Actuarial Tables with Explanatory Notes for Use in Personal Injury and Fatal Accident Cases)”를 개발하였고 이를 “Ogden Table”로 명명하였음.
 2) 「Damages Act 1996」, Section 1.

- 현행 할인율은 2001년 6월 25일 산정되었으며 당시에는 3년간의 모든 만기 물가연동채 실질수익률을 단순평균하였음.
 - 금번 시행될 할인율 산정에는 2001년 이후 지속된 금리 하향세와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 12월 30일 이전 3년간의 물가연동채 수익률을 사용하였음.
 - 또한 “장기 손해배상액 산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할인율 계산 시 만기 5년 미만의 물가연동채 수익률을 제외함.
 - 영국 법무부는 Ogden Table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 발생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할인율 계산 시 만기 5년 미만의 물가연동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한편 할인율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평균 방식을 유지함.
 - 새로운 할인율은 3월 20일 이후 발생될 사고와 3월 20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청구 건에 영향을 미침.
- 금번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자동차보험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할인율 조정에 따른 보험요율 상승³⁾으로 보험금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됨.
- A.M. Best는 최근 영국 자동차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이 10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2017년 수익성 둔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함.⁴⁾
- 그러나 금번 조치에 대해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반발하며 향후 구체적인 할인율 산정 방식의 입법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⁵⁾
- ABI는 금번 할인율 하향 조정으로 보험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등 관계 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kiri](#)

3) Willis Towers Watson(2017. 2. 27), “Comment on the UK Government’s decision to change the discount rate for personal injury damages”.

4) A.M. Best, “Reserve Strengthening to Follow U.K. Personal Injury Discount Rate Change”, <http://www.ambest.com/>.

5) ABI(2017. 2. 28), “Chancellor meets insurance sector leaders to discuss personal injury discount rate”.